

문서번호	재무과-100702
결재일자	2015. 10. 13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주무관	계약팀장	재무과장	기획경제국장
박순재	박만우	김종구	10/13 길수철
협 조			

- 효율적 물품관리를 위한 -  
**2015년도 하반기 불용물품 처분계획**



기 획 경 제 국  
( 재 무 과 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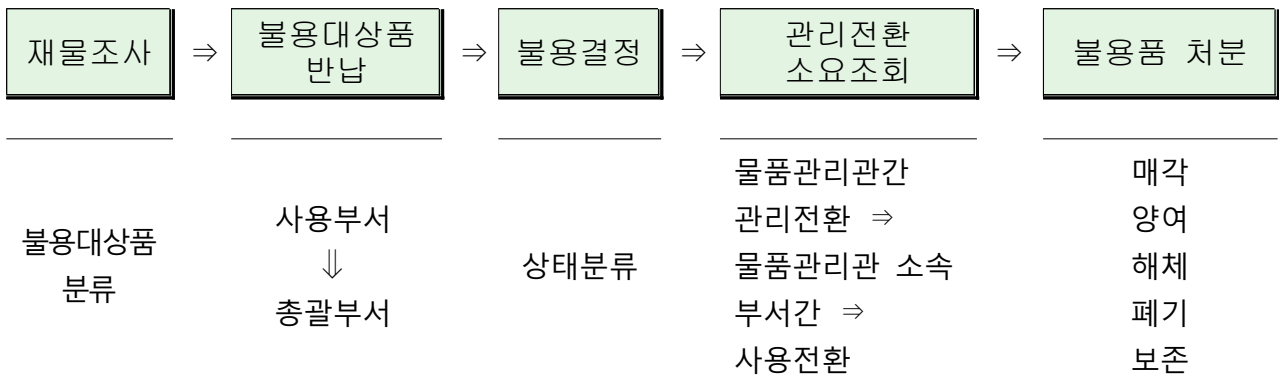
# 2015년도 하반기 불용물품 처분계획

우리구 부서·동에서 사용 또는 보관 중인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거나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불용처리하고, 불용품의 매각·관리전환·양여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물품을 관리하고자 함.

## 1 관련 근거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
-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2조 및 73조

## 2 불용품 처분



## 3 물품 보유 현황

(2015.10월 현재)

물품 보유현황	정수물품	비정수물품	비 고
29,971점	810점	29,161점	취득단가 10만원 이상 내용연수 1년 이상의 비소모성 물품

## 4

## 불용결정대상물품

새울 물품관리시스템 내 부서별 물품보유현황에 등재된 물품 중,

1. 수명이 다하여 사용할 수 없는 물품 (사용불가능품) : 노후화, 파손 등 폐품
2. 사용이 가능하지만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 (사용가능품) : 잉여품 등

※ 내용연수가 도래하기 전에 불용결정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불용결정요청 (수리소요비용과 수리한계비용의 비교, 사용빈도, 관리상태, 고장발생빈도 등)

## 5

## 추진계획

- 추진기간 : 2015.10.15(목) ~ 2015.11.20(금)
- 물품조사 : 광진구 전 부서·동 (각 담당관, 과, 보건소, 구의회, 동 주민센터)
- 처분방법 : 온비드(한국자산관리공사)공개경쟁입찰 또는 수의 계약을 통한 업체 선정 후 매각처리  
(물품관리법 시행령78조)

## 6

## 세부추진일정

## ■ 추진일정

구 분	일 정	비 고
불용 물품조사 및 불용결정처리요청	2015.10.15. ~ 2015.10.23.	각 부서(동)
<b>불용대상물품(불용결정통보서)제출</b>	<b>2015.10.23(금)까지</b>	각 부서(동)
불용품 관리전환 소요조회	2015.10.26. ~ 2015.10.30.	재무과
불용품의 매각 업체 선정	2015.11.02. ~ 2015.11.06.	재무과
불용품 반납 및 인계	2015.11.06. ~ (업체선정 후 일정 공지 예정)	

❏ 불용대상 물품선정 및 불용결정 (부서.동 물품관리담당)

1. 불용대상 물품 불용결정기준 (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2조)

- 1)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
- 2)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
- 3)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
- 4)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
- 5)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물품
- 6)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
- 7) 수선을 필요로 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
- 8)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

※ 내용연수가 미경과된 물품 불용시 불용사유 필히 기재

2. 불용의 결정 (각 부서 동 물품관리담당 -> 불용결정통보서 제출)

- 불용결정하려는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및 가액
- 물품의 구입연월일과 물품의 상황, 물품의 사용 경위, 불용결정을 하는 이유
-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의 확인여부, 처분방법

## 7 행정 사항

❏ 불용결정요청

방법 : 서울행정시스템 내부행정-물품관리-처분관리-불용결정관리-불용결정처리

■ 불용결정통보서(요청서)제출 : 2015.10.15. ~ 2015. 10.23.(금)까지

방법 : 서울행정시스템 내부행정-물품관리-처분관리-불용결정관리-불용결정통보서

■ 불용물품 반납 및 인계 : 추후 매각업체 선정 후 일정 공지 예정

※ PC는 부속품 제거시 인수인계가 불가하며, 하드디스크는 디지털 정보  
과와 협의하여 반드시 FORMAT 후 불용결정처리

- 붙임 1. 내용연수 1부.  
2. 물품보유현황 1부.  
3. 관련법령 1부. 끝.